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임회무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3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 5일
-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8항)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9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 1일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마련을 위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에게는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자에게는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자에게는 1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방지 및 공무원 출산장려, 공무원의 자기계발 강화, 군입영 자녀를 위한 특별휴가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